

황현아 연구위원

### 요 약

- 2020년 선고된 판결들 중 보험 관련 중요 판결 4건을 선정하여 판결의 쟁점, 의의 및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함
- ① (2017다215728) 피보험자인 직원의 동의 없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규약상 수익자가 회사로 명시되어야 함
  - 피보험자 동의나 명시적 단체 규약 없이 회사를 단체보험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러한 수익자 지정은 무효이고 피보험자인 직원의 유족들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② (2019다204869)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기존 수익자나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은 유효함
  -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는 대항요건이며 수익자 변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 ③ (2019다290129)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직업, 재산상태, 계약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이를 추인할 수 있음
  - 제반 정황에 의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임
  -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관련 민사재판에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판단할 때 형사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④ (2018다276799)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사고 면책 대상에서 제외됨
  - 다만, (i)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되고, (ii) 상해의 고의로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 것인지, 이러한 결과가 타당한지가 문제됨



## 1. 검토 배경

- 2020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상법 보험편 규정 및 표준약관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 4건을 선정하여 판결의 쟁점, 의의 및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함<sup>1)</sup>

〈표 1〉 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구분	사건번호	쟁점
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의 요건 및 위반 시 효과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보험수익자 변경의 요건
3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근거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자동차보험 면책 대상인 고의로 인한 손해의 의미



## 2.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의 요건 및 위반 시 효과(2017다215728)

###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X회사는 Y보험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인 직원 A가 사망하자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함
  - X-Y 사이에 체결된 단체보험계약은 (i) **피보험자**: X회사 직원 116명(A 포함), (ii)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X회사(사망 시 및 사망 외 포함)이며, (iii) 피보험자 사망 시 2억 원을 보장함
  - X회사 단체협약에는 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한다. 사망 외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라고 기재됨
    - 단, 네모 칸에 체크는 되어있지 않았음
- 위와 같은 협약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단체보험 수익자를 X회사로 지정한 것이 상법

1) 본고에서 다루는 4건 외에 2020년 선고된 보험 관련 중요 판결로는, (i) 지배법상 무보험운행죄 주체 요건 관련 판결(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ii) ‘암의 진단확정’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iii) 맘모툼 시술비용 환수 관련 하급심 판결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1368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합537625 판결 외 다수), (iv)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복합통증증후군(CRPS)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나25498 판결(확정)), (v) 즉시연금 관련 하급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0. 선고 2019가단114226판결) 등이 있음

제735조의3 제3항<sup>2)</sup>에 위반되는지, 위반된다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수익자 지정만 무효인지가 문제됨<sup>3)</sup>

## 나.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체 규약에서 단순히 회사가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정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수익자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X회사 단체협약은 X회사가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러한 규약을 근거로 피보험자들의 동의 없이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위반됨
-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수익자 지정만 무효임
  - 수익자 지정이 무효가 되면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바,<sup>4)</sup> 본 사안에서는 피보험자인 A의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됨

## 다. 의의 및 영향

-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i) 타인의 생명보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ii) 회사가 수익자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동의 요건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음
  - 1991년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개별 동의를 면제하는 상법 제735조의3이 도입된 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sup>5)</sup> 및 회사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어 왔음<sup>6)</sup>
  - 2014년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이 신설되어 피보험자 및 상속인 이외의 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이러한 점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 동의 면제의 요건을 보다 강화함<sup>7)</sup>

### 2)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 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본 쟁점 외에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으나 이 쟁점은 본고에서 다루지 아니함
- 4)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5) 헌법재판소 1999. 9. 16. 자98헌가6 결정; 위 결정에서 다수의견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개별 동의를 면제하는 것은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이어서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단체보험이 직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므로, 상법 제735조의3은 합헌이라고 보았음. 반면 반대의견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를 면제할 경우 생명보험계약에 내재하는 가해 등 도덕적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되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재해방지대책이 소홀해질 우려도 있어 위 조항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음
- 6) 김문재(2007), 「단체보험계약의 법적 성질과 피보험자의 동의」, 『상사판례연구』, 20(2), pp. 94~111
- 7) 제735조의3 제3항의 법문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라고 되어있으나 실제 문제되는 사례는 대부분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익자 지정에 관한 단체 규약의 구체성의 정도를 명확히 한 것임
  -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보험의 요건으로서 규약(제735조의3 제1항)의 의미에 대해 “반드시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나,<sup>8)</sup> 수익자 지정 관련 규약(제735조의3 제3항)의 의미와 구체성에 대한 판례는 없었음
- 또한, 제73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만 무효가 된다고 봄으로써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존 대법원 판례는 제735조의3 제1항의 규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sup>9)</sup> 제735조의3 제3항의 규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음
  - 이에 제735조의3 제3항 위반 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수익자 지정만 무효가 되는지 논란이 있었고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볼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됨
- 본 판결은 단체보험 활성화라는 상법 제735조의3의 도입 취지 및 피보험자 및 상속인 보호라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의 신설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법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sup>10)</sup>



### 3. 보험수익자 변경의 요건(2019다204869)

####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보험계약자 X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Y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A(당시 동거인)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이후 B(X의 딸)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로 하고, A에게 이를 통보한 후 사망함
  - X는 A에게 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구두로 통지한 후 수익자 변경을 위해 A와 함께 Y보험회사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일정상 문제로 보험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음<sup>11)</sup>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였음

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9)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0) 김문재(2020), 「단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행방-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33(3), pp. 146~147

11) 본 사안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i) 2009년 X-Y 보험계약 체결, (ii) 2014년 X와 A의 동거관계 청산, (iii) 2016년 X가 A에게 연락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야 하니 Y보험회사 사무실을 함께 방문하자고 요청하고 A도 수락하였으나 일정상 문제로 만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 못함, (iv) 2017년 X 사망

○ 이 경우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sup>12)</sup>

## 나.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기존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함

- 본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X가 수익자를 변경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한 이상, 그 의사표시가 A나 Y보험회사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자는 B로 변경됨<sup>13)</sup>

## 다. 의의 및 영향

○ 보험계약자는 일단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유롭게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수익자 변경 사실을 기존 보험수익자나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가 문제됨

- 대법원은 계약자의 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sup>14)</sup>이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sup>15)</sup>이므로, 수익자 변경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기존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봄
-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수익자 변경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sup>16)</sup> 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음<sup>17)</sup>

○ 수익자 변경 자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보되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정한 상법 및 판례는 수익자 변경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험회사의 이중지급 위험을 방지하고 있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판례는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수익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루어진 경우 의사표시 존재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sup>18)</sup> 수익자

12) 본 판결에서는 보험수익자가 B로 변경되었다는 전제에서 B가 A를 상대로 보험금채권 양도 청구 및 보험회사에 대한 양도 통지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으나 이에 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아니함

13) 참고로, 수익자 변경 통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수익자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음. 즉, 보험회사는 수익자 변경 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됨(상법 제734조 제1항)

14) 권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가져오는 권리를 말함

15) 의사표시가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하여질 필요가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는 때 단독행위가 성립되며, 유언, 재단법인 설립(기부), 권리의 포기, 상속포기 등이 이에 해당함

16)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동의, 채무면제, 추인, 취소, 상계, 해제, 해지 등이 이에 해당함

17) 전한덕(2020),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발생 요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외법논집』, 44(3), pp. 346-349; 최병규(2020),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한 보험계약자 의사표시의 성격」, 『상사법연구』, 39(2), pp. 154-156(현행법 해석론상으로는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나,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가 보험자에게 도달할 것을 요하는 독일 입법례를 참고하여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임); 양지훈(2020),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사회과학연구』, 39(3), pp. 136-138

18) 예컨대 본 판례 사안에서 A가 X로부터 수익자 변경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수익자 변경을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하기로 하는 약속도

변경의 방식을 구체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 4.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근거(2019다290129)

###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보험계약자 X는 본인의 직업 및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함
  - X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3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월 15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함
  - 특히 2005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입원일당 보험만 11건을 체결하여 월 3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5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이와 관련하여 X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에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됨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sup>19)</sup>에 위반되어 무효임

### 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보고, 본 사안의 경우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판단의 근거가 된 사정은 (i)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ii) 단기간 내 집중적 계약 체결, (iii) 거액의 보험금 수령, (iv)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고지의무 위반,<sup>20)</sup> (v) 입퇴원 횟수 및 기간,<sup>21)</sup> (vi) 기타 정황<sup>22)</sup> 등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19)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 기존 보험 가입 내역(4건의 입원일당 보험 가입), 보험금 수령 내역(4건의 입원일당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수령), 입원 사실 등에 대해 허위로 고지함

21) 통원치로나 단기간 입원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식도암, 식이운동이상증,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230일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음

22) X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계약체결일 2009. 11. 29)상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에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제척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봄

## 다. 의의 및 영향

- 소득이나 경제사정에 비해 과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기초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해왔음<sup>23)</sup>
  - 법원이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는지는 사건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해야 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평가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본 판례 사안도 원심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음<sup>24)</sup>
- 최근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두 건의 사건에서 살인 및 보험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나,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sup>25)</sup>
  -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보험사기 및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된 민사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가 문제됨
- 과거 대법원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살인청부업자 등에게 배우자 살인을 교사한 사례에서 그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sup>26)</sup>
  - 그러나 최근 문제된 사례와 같이 사고사인지 살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살인죄의 무죄가 선고된 경우 관련 민사재판에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불분명함
- 형사재판에서 살인·보험사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나 이 경우 재판 결과의 수용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2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다수

24) 참고로 원심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부정한 근거는 (i)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ii)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입원일당 보험의 수가 많지 않은 점, (iii)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iv) 수입 대비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v) 보험계약 체결 후 5년 경과 후부터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함(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50991 판결)

25) 이른바 '금오도 사건'과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임. (i) '금오도 사건'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17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아내가 사망하자 그 남편이 살인죄로 기소된 사안인바, 대법원은 남편의 고의적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음(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5503 판결)(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음). 이후 남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가 남편을 상대로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 진행 중임. (ii)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은 남편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탑승했던 아내(캄보디아인, 사고 당시 만삭)가 사망한 사건으로, 사고 당시 아내 명의로 95억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검찰은 남편을 살인 및 보험사기로 기소하였고 2015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후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다시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관련 민사사건으로 13건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

2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 및 살인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민사재판에서 보험계약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민사재판에서도 보험계약 부정취득 목적을 부정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불분명함
    -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입증은 민사재판에서의 요건사실 입증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바, 형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충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기 관련 향후 수사 및 보험회사 업무처리에도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금 청구 관련 민사사건에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다투어지는 경우, 형사재판의 무죄판결 및 관련된 사실인정을 민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5.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인 ‘고의’의 의미(2018다276799)

###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운전자 X는 동료 Y가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Y를 떼어놓기 위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이다가 급제동을 하였고, Y는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중상해를 입었음
- X는 직장동료들과 모임을 마치고 동료들을 귀가시켜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Y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Y가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며 보닛에 올라타자 이를 떼어놓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함
-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가 문제됨
- 상법상 고의에 의한 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이고<sup>27)</sup> 자동차보험약관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sup>28)</sup>

### 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이나 중상해 등에 대해서는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망 등에 관한 손해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7) 상법 제659조

28)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5조, 제8조제1항; 단,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경우 고의사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고의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구상을 청구함

- 사망 등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 여부는 (i)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ii)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iii)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 이 사건의 경우 X는 Y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약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영구장애와 중증 의존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다. 의의 및 영향

- 운전자가 자동차 보닛에 올라타거나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면책 대상인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음
  - 대법원은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트려 상해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보았음<sup>29)</sup>
  - 반면, 피해자가 보닛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임에도, 차량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인근 공장 철제 빔에 부딪혀 중상해를 입은 사안 및 사망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책을 부정하였음<sup>30)</sup>
- 이번 판결은 상해에 대한 인식·의욕은 있으나 사망 및 중상해에 대한 인식·의욕은 없는 경우 그 사망 및 중상해 관련 손해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것임
  - 기존 판례 사안의 경우 주로 음주 등을 단속하는 경찰이나 분쟁 당사자가 피해자였던 반면 본 건 판례 사안은 친한 직장동료들이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면책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단순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사망 및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향후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29)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단속 경찰관이 승용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경찰관이 도로에 추락한 후 차량 뒷바퀴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술에 취한 피해자가 조수석 보닛 위에 엮드려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자, 승용차 보닛 위에 피해자를 태운 채 44m 진행하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뇌손상, 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사안)

3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단속 경찰관이 자동차에 매달려가다가 떨어지며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안);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말다툼 중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에 매달리자 운전자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피해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안)